

대부업 신용정보집중제도 관련 Q&A

1. 신용정보법의 주요내용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신용정보법 제19조)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함

(위반시 제재) 권한없이 변경·삭제 및 이용 불가능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위반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신용정보 관리 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법(제20조)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내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위반시 제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용정보회사 등은 의뢰인 관련 정보, 의뢰받은 업무, 처리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위반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보호·관리인(임원 또는 신용정보 업무총괄 위치에 있는 자)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함

(위반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제32조)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조회하는 자)는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대해서는 제외
- 동의방식 : 서면,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 입력, 녹취 등
- 동의내용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반드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징구

(위반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 제공시 통보(제32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동의없이 제공시 제공하는자 또는 제공받는 자는 제공사실 및 이유를 통보하여야 함(통보방법 : 서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전자우편)

(위반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33조)

-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 개인이 법 제32조제1항의 방식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등은 가능(마케팅용 상품서비스 안내 등 관련 동의서는 별도 징구)

(위반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기타 관련 법령사항 준수 필요 (기 배포한 신용정보집중제도 설명회 자료 참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 신용정보업무 > 관련법규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자주 나오는 질의

- Q) 다수의 업체(계열사, 관계사)가 같은 아이피를 사용해도 되는지, 같은 서버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A) 서로 다른 법인이 동일한 IP를 사용하면 정보공유 및 정보 등록/해제에 따른 책임여부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불가능

Q) HOST접속 업체도 WEB방식을 유지해야하는지 여부

- A) 원칙적으로 참가 기관은 WEB 방식, 전용선(HOST)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신용정보 집중방식은 1개로 유지하되, HOST 방식으로 정보를 집중하는 기관도 은행연합회 통합업무시스템(<http://nkfb.cif.or.kr>)에는 제재금 업무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가입해야 함(분담금 추가 납부 없음)

Q) 원금은 연체하나 이자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고객의 연체등 정보를 등록해야하는지 여부

- A) 민법상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등록해야 하는 연체정보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행지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개별 금융기관이 맺은 약정과 민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 등록함

Q) 화해계약 체결시 집중여부? (기존계좌 해지 후 재등록 해야하는지)

- A) 개별 금융기관마다 화해계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화해계약건은 계약의 내용을 보아 각각 결정함.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화해계약이 해제되는 해제조건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기존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신용정보의 등록 및 해제(지)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음. 다만, 기존의 법률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정보의 등록 및 해제(지)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처리

3. 시행일 관련 질의

Q) 시행일 이후 증액된 대출의 집중여부?

- A) 추가 여신(증액)이 발생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집중대상이 됨** (반드시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해야할 것임)

Q)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 또는 계약갱신 시 신용정보 처리 방법?

- A) 시행일 이전 대출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용정보를 집중하지 않으며,

이전대출과 별도의 약정을 맺는 경우 등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를 집중함.

EX) 과거 계약에 자동만기연장 조항 등 새롭게 약정을 맺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다면, 해당 정보는 신규 집중하지 않아도 됨

※ 만기연장 시 고객의 내방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절차가 될 것임

Q) 집중대상이 된 증액, 만기연장 채권의 등록사유발생일자는 3월 30일 이전으로 입력 가능한 지 여부?

A) 추가 여신이 발생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해야 하므로 3월 30일 전의 일자를 등록사유발생일로 집중할 수 없음(단, 양수한 채권의 경우 원 채권의 사유발생일로 등록해야 하므로 3. 30.이전으로 집중 가능)

Q) 한도대출의 경우 시행일 이전 약정채권으로 시행일 이후 대출금 지급된 채권의 집중대상 여부?

A) 3. 30일 전의 한도대출의 경우 집중대상이 아님
※ 한도거래 약정대출금은 한도약정금액을 대출금 잔액으로 봄(실제 사용금액을 고려한 대출금 잔액 변경 없음)

3-1. 시행일 관련 주요내용

- ☐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개인대출, 신용공여에 한하여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한 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대부업 신용정보 집중
- ☐ 따라서 등록사유발생일자는 시행일자 전이 될 수 없음
 - 연체등정보의 경우 상기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대출, 신용공여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등록(단, 양수도 채권 제외)
- ☐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이 시행일 전에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면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4. NPL 및 양수도 관련 질의

Q) NPL사의 집중대상 포함여부는? 포함시 대상채권은?

A)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 대부업자”^{*}가 종합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대부업자임(전년도 말 기준으로 대상 선정)

^{*}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년도 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2.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4.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5.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5조의2제4호(신용정보의 집중·관리기관)

② 따라서 상기 대부업자가 ‘15. 3. 30일 이후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신용정보를 기등록한 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집중대상 채권이 됨

Q) 대부업체가 시행일 이전에 양수한 채권을 시행일 이후에 대부업체에 양도할 경우 신용정보 등록 방법?

A) 시행일 이후에 양수·도가 일어나더라도 신용정보는 등록하지 않음

- 시행일 전에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가 채권을 타 기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신용정보시스템상에 등록된 신용정보가 없으므로, 동 채권을 양수하는 기관에서도 등록할 신용정보가 없음. 즉, 시행일 이후에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라도 채권을 양도하는 기관에 기등록된 신용정보가 없다면 신용정보를 등록하지 않아야함
- 그러나 시행일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채권을 양도하는 기관에 기등록된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집중함

Q)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부업체가 양수한 대출 채권을 신용정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A) 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은 대출정보를 해지처리하고,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는 관련채권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정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단, 연체등정보는 대출채권 분류여부와 무관하게 등록함

4-2. NPL 및 양수도 관련 주요내용

□ 채권 양수시

-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집중대상 대부업자 포함)으로부터 15. 3. 30일 이후 채권을 양수한 경우

*** 채권양도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이 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을 양수한 경우 및 '15. 3. 30일 전에 양수한 경우에는 집중대상 아님**

- 해당 대부업자는 동 채권을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양도기관에서 집중한 등록사유발생일을 양수한 채권의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개인대출정보(기업신용공여 포함)를 집중
- 관련 개인채무보증정보는 개인대출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집중
- 연체등정보는 양도기관에서 집중한 등록사유발생일 및 등록금액을 양수한 채권의 등록사유발생일 및 등록금액으로 집중
-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집중대상 대부업자 포함)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
 - 집중대상 아님

※ 양수채권을 환매처리한 경우 집중한 관련 신용정보를 취소(삭제) 처리

□ 채권 양도시

-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집중대상 대부업자 포함)에 양도한 경우
 - 개인대출정보 및 개인채무보증정보는 해지(기업신용공여정보는 “0” 처리) 처리
 - 연체등정보는 해제 처리하고, 해제코드는 “17”로 처리(중요)
 - 신용정보제공·이용기관(집중대상 대부업자 포함)이 아닌 기관에 양도한 경우
 - 개인대출정보 및 개인채무보증정보는 해지(기업신용공여정보는 “0” 처리) 처리
 - 연체등정보는 해제 처리하고, 해제코드는 “16”로 처리(중요)
- ※ 양도채권이 환매된 경우 해지, 해제 처리한 관련 신용정보를 소급 재등록

5. 신용정보별 규약 관련 질의

Q) 대부업권의 신용정보 집중 관련 근거

- A)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5조의2(신용정보의 집중·관리기관) 참조 요망

Q) 시행일 이후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 집중여부? (대출금 선지급 / 서류 후징구 시, 고객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A)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신용정보를 집중하게 되면 **신용정보법 위반**이고, 신용정보를 집중하지 않으면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동의서를 징구한 후 집중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참조

**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 '누락'에 해당

Q) 집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는지? (업체내에서 대부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적은 경우)

- A) 신용정보 집중대상 대부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집중시 **예외되는 경우는 없음**

Q) 상호회사의 약관대출의 경우, 부금 내에서 연체시 집중여부? (집중 근거와 규정 요청)

- A) ①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대출**의 경우 개인대출정보 등록대상이 아님
② 불입액을 담보로 하여 동 불입액 범위내의 약관대출로서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등정보로 등록하지 아니함(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7조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특례】 참조

Q) 어음할인도 집중 대상인지?

- A) 어음할인도 대출의 한 형태이므로 집중대상에 포함

Q) 실수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에 신용정보를 집중한 경우 처리방법?

- A) 금융기관에서 착오 등록으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착오등록(0077) 임을

입력 하여야 함. 즉 **착오등록 코드를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해제(지)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21조 【신용정보의 정정·삭제】참조

Q) 추가대출 시 등록금액 변경 가능한지? (같은 계좌로 대출이 된 경우)

- A) 개인대출정보의 등록금액은 같은 계좌내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정정처리함
(대출정보의 금액은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금액과 그 개념이 달라, 자유롭게 정정 가능함)

Q) 연체 발생일 이후 3개월 후 등록시 정확한 기준은? (90일 이후인지, 3개월 이후인지)

- A) 연체등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은 연체기산일(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예) 연체시간일 2. 2.인 경우 등록사유발생일은 5. 2이 됨
※ 등록사유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 등록사유발생일이 됨

Q)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금액과 연체금액의 차이?

- A) ① 등록금액은 등록사유발생일 현재의 **잔여대출원금**이며, 연체금액은 연체 중인 **잔존채권원금**임(연체금액 및 등록금액 산정시 이자 및 제비용은 제외함)
② 대출원금을 전부 상환하고 이자만 남은 경우 연체금액을 “1”로, 제비용이 남은 경우 연체금액을 “2”로 처리함
③ 등록금액은 오류수정이 아니면 정정이 불가하며, 연체금액은 상환시마다 정정 처리함
cf) 개인대출정보는 등록금액, 연체금액 개념이 없고 오직 등록금액만 있음.
개인대출정보의 등록금액은 잔여대출원금이며, 대출 원금 상환 후 이자 및 제비용이 남은 상태로 관리할 경우 등록금액을 “1”로 변경함

Q) 금융질서문란정보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A)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 3. 신용도판단정보 → 4. 금융질서문란정보 참조

Q) 대부업체간 합병시 신용정보 처리요령

- A) 피합병기관의 신용정보를 합병기관으로 이관*함

* 피합병기관의 신용정보를 삭제하고, 합병기관에서 피합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정보와 동일하게 재등록

- 시행일 이전 합병의 경우 신용정보 관련 조치사항 없음
- 시행일 이후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기관이 시행일 이후 집중한 신용정보를 합병기관으로 이관(피합병기관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라할지라도 신용정보 시스템상 등록될 근거가 없었다면, 합병기관이 등록 불가)

Q) 채무부존재결정 등으로 인한 채무무효 판결시 조치방법은?

- A) ① 연체등정보의 경우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1월 내에 삭제(취소) 처리해야 함. 단, 대부업자가 먼저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중에 차주가 채무부존재를 제기할 경우에는 내부품의일(최종판결확정일보다 빠른 날이어야 함)로부터 1월내에 삭제(취소) 처리해야 함
- ②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되면 연체등정보와는 달리 해당 대부업자가 판단하여 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를 삭제(취소) 처리할 수 있고,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정정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품의일(최종판결확정일보다 빠른 날이어야 함)로부터 1월내에 삭제(취소) 처리해야 함
- ③ 채무부존재소송이 확정되어 삭제(취소)한 신용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 최종판결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며, 이때 연체등정보의 경우 등록사유발생일은 **예외적으로 최종판결확정일로 함**

Q) 회생 채권 매입회사의 신용정보 등록 요령?

- A) ① 채권 양수도시 양수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은 양도기관에서 기 집중했던 신용정보와 동일한 상태(등록사유발생일, 등록금액 등)로 집중하는 것임. 즉 연체등정보로 집중되어 있었으면 연체등정보를 동일하게 집중하고, 개인대출정보도 집중되어 있었으면 개인대출정보도 동일하게 집중하는 것임
- ② 개인회생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채권의 경우 개인대출정보는 계속 등록 상태로 유지되며, 연체등정보는 일괄 해제 처리됨. 따라서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된 채권을 양수한 경우 개인대출정보는 등록해야 하며, 연체등정보는 별도의 처리가 없음. 개인회생절차중에 면책을 받은 경우 해당 대부업자는 직접 개인대출정보를 해지 처리하나, 동 채무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개인채무보증정보는 해지(보증인이 면책을 받은 경우는 해지 처리) 처리하지 않음

Q) 개인회생, 신용회복확정, 개인파산등의 경우 조치방법은?

A) 주요내용의 표 참조

Q)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중인 채권의 경우 집중대상 여부? (미인가, 미확정 채권으로 진행중인 채권)

- A) ①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인가결정, 신용회복지원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공공정보로 등록
- ② 이와 함께 종합집중기관은 파산면책결정의 경우 개인대출정보(보증인 본인이 파산면책시 개인채무보증정보)를 일괄 해지하고 연체등정보를 일괄 해제함. 개인회생인가결정, 신용회복지원확정결정의 경우 연체등정보를 일괄 해제함
- ③ 이때 개인회생인가의 경우 개인회생 미포함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는 연체등정보를 소급하여 재등록하고, 신용회복확정의 경우 신용회복 미대상 기관이나 미포함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는 연체등정보를 소급하여 재등록 처리(소명시 제재금 배제)
- ④ 개인회생절차 중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대부업자가 직접 개인대출정보 해지 처리
- ⑤ 향후 파산면책 취소, 개인회생인가 폐지, 신용회복지원 실효가 발생한 경우 연체등정보를 소급(당초 등록금액 및 등록사유발생일) 재등록. 이때 면책 취소의 경우 개인대출정보도 소급(당초 등록사유발생일, 현재 등록금액) 재등록
- ※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등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 전에 개시결정,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연체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록하지 아
니함
- ※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경우 공공정보의 등록(1003) 및 연체등정보의
해제는 해당 대부업자가 직접 처리함

5-1. 신용정보별 규약 관련 질의 주요내용

구분	신용회복지원	파산면책	개인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등록코드	1101	1201	1301	1003
공공정보 등록기관 (등록사유발생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확정일)	법원 (면책결정일)	법원 (변제계획인가일)	해당 금융기관 (재산보전처분일)
공공정보 등록기준	- 관련 정보(연체 등 정보)가 기 등록된 경우에 적용	- 신용정보 등록 유무와 관계없음 (2014.7.1. 부터)	- 신용정보 등록 유무와 관계없음 (2014.7.1. 부터)	- 신용정보 등록 유무와 관계없음 (2014.7.1. 부터)
연체등정보 해제사유발생일 및 기타	- 신용회복지원확정일 - 연체 등 정보 해제 - 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기관 및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 등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서 재등록	- 면책결정일 - 연체등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 보증정보 일괄 해제(지)	- 변제계획인가일 - 연체등정보 해제 -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등정보는 해당금융기관에서 재등록	- 법원의 인가결정일 -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체등정보 해제
공공정보 해제기준	- 2년 이상 변제 또는 변제 완료 -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하여 연체등정보 또는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시 - 재창업자금 지원받은 경우 (1601)	- 면책 채권 변제한 때 또는 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 과한 때 - 재창업자금 지원받은 경우 (1601)	- 회생절차 종결 - 회생조건 이행이 완료된 시점 (법원의 보고 의무 면제시 포함)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 과한 때
연체등정보 재등록 (당초 사유발생일 및 당 초 등록금액으로 등록)	- 신용회복지원 실효, 취소 등 - 신규 취급 대출 등 연체 시	- 면책 취소 등 - 신규 취급 대출 등 연체 시	- 개인회생절차 폐지 등 - 신규 취급 대출 등 연체 시	- 회생절차 폐지 등 - 신규 취급 대출 연체 시
기타		- 주채무자면책시 보증채무에는 영향 없음		

6. 기업신용공여정보 관련 질의

Q) 기업리스상품은 어떻게 집중 하는지?

- A) 기업리스상품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하여 신용공여조사표 상의 해당 코드로 집중
- 금융리스(132) : 금융회사가 기업 및 고객에게 서비스를 임대하는데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책임을 지는 리스채권을 처리하는 계정
 - 운용리스(136) : 금융회사가 기업 및 고객에게 설비를 임대하고 그 자산의 유지관리 및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리스채권을 처리하는 계정

Q) 개인사업자의 대출정보 처리 방법?

- A) 개인사업 대출이 발생 시, 대출금액을 ‘금잔’으로 하여 발생일을 해당 기준일로 하여 31번 보고서로 기한 내에 집중(단, 대상기업체 정보가 미등록되어 있다면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 후 개인사업자 대출정보 집중**)

Q) 기업대출과 개인대출의 정확한 구분 기준은?

- A) ① 기업자금대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기업에 대한 대출이며, 개인대출(가계자금대출)은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 소비자금 등을 위한 대출임
-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한 개인에게 제공된 대출일지라도 그 자금 목적이 기업자금인지 가계자금인지를 금융기관이 판단하여 구분 집중해야 됨

Q) 시행일 당일 매입한 채권의 경우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 대상인지 여부?

- A) 시행일 이후부터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

Q)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기업신용공여정보는 소급 등록해야하는지 여부?

- A) 시행일 이전 발생한 건은 소급등록하지 않음

Q)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변경되었을 경우 정정 절차(기업신용공여정보)?

- A) 집중 보고서상 담보대출로 집중되어 있던 계정과목의 금잔을 “0”으로 집중하고 변경된 해당 계정과목에 금잔을 집중

7. 전산구축 및 분담금 관련 질의

Q) 전용선 방식의 이점은?

- A) ① 배치 업무의 자동화 가능, ② 금융회사의 온라인 거래를 내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처리 가능, ③ 금융회사의 은행연합회 자료 처리 사용자가 많을 경우 내부통제 용이, ④ 강력한 보안성 및 신뢰성 제공

Q) 전산시스템 테스트 기간 부여 여부?

- A) 신용정보 시스템 참가 절차(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완료 후에 테스트가 가능하며, 일정은 3. 2.(월) 이후로 시작될 예정임.

※ 테스트 가능 일정

구분	가능 일시	사전 수행 TASK
전용선(HOST) 방식	2015. 3. 2.(월)	전용회선 연결
WEB 방식	“	통합업무시스템 가입

Q) 신용정보 집중방식 변경 가능 여부(WEB→HOST) ?

- A) 원칙적으로 참가 기관은 WEB 방식, 전용선(HOST)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함

* 각종 통계, 분담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선별적으로 허용

※ 신용정보 집중방식은 1개로 유지하되, HOST 방식으로 정보를 집중하는 기관도 은행연합회 통합업무시스템(<http://nkfb.cif.or.kr>)에는 제재금 업무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가입해야 함(분담금 추가 납부 없음)

Q) VPN을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

- A) 정보보안(암호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이므로 반드시 사용해야 함

Q) (배치파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A) 10만건 내 처리 가능. 10만건을 초과할 경우 은행연합회 전산개발실 담당자와 처리 날짜 및 방법 등 사전협의 필요

Q) 최초비용(HOST : 1천만원, WEB : 50만원)개념에 대한 설명 요청

- A) 신용정보 분담금은 과거 1년간 정보사용량을 근거로 산정하나, 신규가입 기관의(현시점의 직권검사대상 포함 대부업자) 경우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괄 부과되며, 이는 신규가입기관의 **당해년도 사용 분담금**임

Q) 2016년도 분담금 산정 기준, '건수'의 정의, 최저 분담금, 분담금 산정에 대한 세부자료 확인이 가능 여부 등

- A) ① 분담금은 정보별 건수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협회에 대부업 예상 분담금(안) 등을 송부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2016년도 이후 분담금 규모 예상 가능, ② 건수는 전산적으로 처리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등록, 해제, 해지, 정정 등을 하였다면 각각 1건으로 처리됨, ③ 최저분담금은 1년에 50만원이며, 분담금 산정에 대한 기준 등은 향후 확인이 가능함
※ 대부업권은 현재 신용정보를 집중만 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건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예시 : 1건 집중 시, 0.5건으로 집계) 분담금을 산정함

Q) 온라인이 무엇인가요? WEB이 무엇인가요? 저희 기관은 WEB 기관인데 어떤 설계를 참고해야 하나요?

- A) ① 전용선(HOST) 방식: 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간의 전산망을 직접 연결하여 폐쇄망으로 데이터를 거래하는 방식
- 온라인 거래 : 전용선(HOST)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신용정보 데이터를 즉시 처리(한건 한건 처리)
 - 배치파일 처리 : 전용선(HOST)을 통해 은행연합회 서버로 대량 배치파일을 송신하여 일괄 처리(즉시 반영 되는 것은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1 참고)
 - 대량 건을 건건이 온라인 거래를 일으켜 처리하는데 어려운 데이터를 배치파일로 만들어서 일괄처리 가능
 - 1건 ~ 10만건 처리 가능, 일일 개별업무의 데이터 건수가 10만건 이상일 경우 연합회 전산담당과 사전 협의
 - 배치파일을 24시간 송신 가능하나, 17:30분을 기준으로 접수일자가 구분됨, 17:30분까지 접수된 내역을 전일자 2차분으로 처리하고 17:30분부터 24:00까지 접수된 내역을 당일자 1차분으로 처리함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기관으로 송신하는 전송시각은 전체 금융기관의 당일 요청 데이터량에 따라 조금씩 변동됨)
- ② WEB 방식 (통합업무시스템) : 전용선망 구축이 어려운 금융기관을 위하여 은행연합회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용정보 처리 시스템. WEB방식으

로도 실시간 데이터 처리(온라인 거래와 유사)/대량 배치 처리(전용선 배치파일 처리와 유사)가 가능

<표 1> 전용선(HOST) VS WEB (통합업무시스템)

구 분	전용선(HOST)		WEB(통합업무시스템)	
	온라인 처리	배치파일 처리	화면 단건 조작	배치파일 처리
이용시간	조 회 : 24시간 365일 서비스 등 록 : 07:30 ~ 22:00 (공휴일, 일요일 제외, 토요일가능)	기관 보고 : 00:00 ~ 24:00 연합회 응답 : 하단 표 참고	조회/등록 : 08:00 ~ 22:00 공휴일, 일요일 제외, 토요일가능	기관 보고 : 00:00 ~ 24:00 연합회 응답 : 익일 04:00 (공휴일, 일요일 제외, 토요일가능)
(은행연합회 DB) 처리되기 까지 시간	즉시 반영	마감일시 (17:30분 기준시각 이전 / 이후 전일2차/당일 1차) 까지 접수된 내역 익일 새벽 일괄 처리	즉시 반영	마감일시 까지 접수된 내역 익일 새벽 일괄 처리
유 형	단건 처리	대량 처리	단건 처리	대량 처리
참고할 내용	신용정보 온라인 설계서 (단건 / 실시간 처리 파일 생성용), 신용정보 파일전송 설계서 (대량 처리 파일 생성용)		신용정보 파일전송 설계서 (대량 처리 파일 생성용), 대부업권 참가 설명회 자료	
	신용정보 관리 규약,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온라인/파일전송 설계서			

※ 은행연합회 응답 시간은 작업 처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 2> 전용선(HOST) 파일전송 VS WEB (통합업무시스템) 파일전송 비교표

구 분	전용선(HOST)	WEB(통합업무시스템)
참고 사항	17:30분 기준으로 구분하여 처리 ① 00:00 ~ 17:30 전송분(전일 2차분) - 전 영업일을 접수일로 하여 22:00	00:00 ~ 24:00 까지 송신한 파일을 은행연합회에서 24:00시 일괄 배치 처리

	이후 처리됨, 오류통보 (23:00 ~ 익일 03:00) - 오류자료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② 17:30 ~ 24:00 전송분(당일 1차분) - 해당 영업일을 접수일로 하여 처리 후 오류통보 (익일 03:00 ~ 08:00) - 오류자료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③ 공휴일/일요일 전송분은 다음영업일에 처리됨	- 해당 영업일을 접수일로 하여 처리 후 오류통보 (익일 03:00 ~ 08:00)
--	---	--

8. 가입 및 집중시기 관련 질의

Q) 전산개발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면 유예기간을 줄수 있는지?

A)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15. 3. 30에 대부업 신용정보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함. 동 시행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일정범위 내에서 신용정보 제재금의 부과는 배제 가능

Q) 통합업무시스템 회원가입 시점은? (시행일 이전에 꼭 가입해야 되는지, 집중사유 발생 시 가입해도 되는지 여부)

A) 분담금을 납부한 후 회원가입 가능하며, 가능한 한 시행일 이전에 가입 요망 WEB방식(<http://nkfb.cif.or.kr>)로 파일배치 테스트를 해야할 경우 3월 초에 가입하여 테스트를 진행해야함

9. 제재금 관련 질의

Q) 은행연합회에서 제재금 대상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A) ① 신용정보 제재금 예정 부과

- 지연분 : 사유발생일과 접수일과의 차이가 7영업일(신용정보 종류별로 일부 상이)
- 변동분 : 취소(삭제), 연체등정보의 등록금액 정정, 연체등정보의 사유발생일 정정

② 신용정보 제재금 확정 부과(예정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후 심사)

- 지연 : 정확히 등록하였으나 사유발생일보다 늦게 집중한 경우

- 누락 : 집중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신용정보를 종합집중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 등록금액 부정확 : 일정범위를 벗어난 등록금액의 부정확
 - 고의·부적절 : 고의적으로 신용정보를 지연, 누락 처리하거나 기타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
- ※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 > 신용정보 업무 > 관련법규 >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 참조 요망

Q)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공공정보가 집중되어, 정보를 해제(지)하게 될 경우 제재금이 나오는지 여부?

- A)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인가결정, 신용회복지원확정 정보가 종합집중기관에 등록이 되면 연체등정보(파산면책의 경우 개인대출정보의 일괄 해지)가 일괄 해제되면, 동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제재금 부과는 없음

Q) 삭제정보에 대한 제재금 소명 요령?

- A) 취소(삭제)의 경우 무조건 예정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소명을 해야 함
- 입증내용은 “취소(삭제)가 적절했다”라는 사실을 증빙해야 함
 - 예)
 - i) 부당한 등록의 취소(삭제) : 원래 등록대상이 아니었다는 원장 등 자료를 제출하며, 오류 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지연, 누락 등 제재금 부과
 - ii) 해지 건을 취소(삭제) : 소급 재등록 및 해지 처리 경우 제재금 배제
 - iii) 해제 건을 취소(삭제) : 소급 재등록 및 해제 처리 경우 제재금 배제. 다만, 해제 건이 기록보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오류 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지연, 누락 등 제재금 부과

10. 기타사항 질의

Q) 개인(신용)정보 동의서가 수정되어야 하는지?

- A) 종합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및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근거내용 포함 필요
- ※ 대부업협회에 관련 양식을 송부하였으니 확인 요망

Q) 정보 집중시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이 있는지? (정상채권의 경우에도)

A)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기업의 신용도 및 신용평점 판단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음. 관련 질의는 CB사에 확인 요망

Q) 시행일 이후, 금융감독원장 직권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조치사항은?

A) ① 신용거래정보는 해지 처리하고,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 처리
② 신용정보통합업무시스템 가입 해지

Q) 신규 연결 작업시 각 절차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데, 각 절차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

A) 신용정보 관리규약 등 문의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02) 3705-5296
업무프로그램 전산개발 문의 : 은행연합회 전산개발실 (02) 3705-5131, 5309, 5312, 5299
전산연결 관련 문의(HOST) 은행연합회 전산부 (02) 3705-5291